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No. 10 2009. 8. 17

유럽의 건축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유럽 건축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 1990년대 말, 유럽 각 국에서는 자국의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기존 건축물의 가치 및 품격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며, 공간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시작
- 현재 성공적인 건축정책을 통해 국가의 문화, 산업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국가들로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등 유럽연합의 국가들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덴마크,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건축정책을 수립하거나 준비 중에 있음
- 유럽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유사한 목적과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음
 - 건축관련 부서의 행정프로세스와 시스템 개선 등 관련기능 통합을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정책의 주요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 건축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정책기관을 설립하거나 민간주도의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 네덜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전담조직기구를 조성하여 건축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공공 및 민간의 건축활동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연구·홍보 등을 수행
- ※ 영국은 CABE와 같은 민간 주도의 건축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전문가 조언 및 행정지원을 뒷받침하고, 관련 연구 및 건축문화 이벤트 등을 기획·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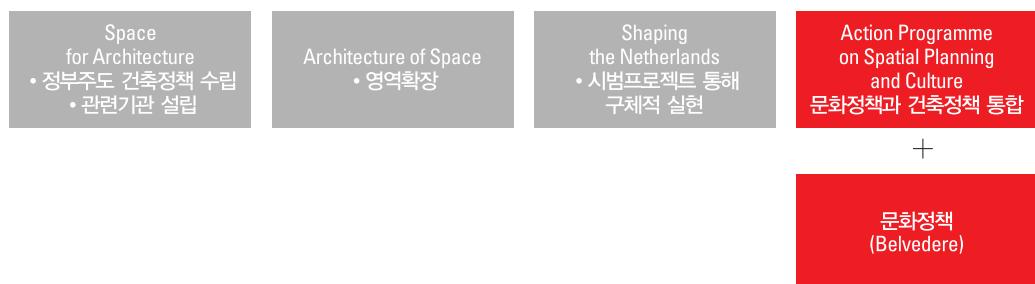
1.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 최초로 건축정책을 시행한 네덜란드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총 네 차례의 건축정책 문서를 발간하여 건축관련 인프라 조성(1차), 건축관련 영역의 확장(2차), 시범프로젝트 선정(3차), 문화정책과의 통합(4차)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
- 첫 번째 건축정책(1991년, Space for Architecture)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 건축협회(Nai), 건축관련 자금 확보를 위한 건축지원재단, 각 지방 건축센터 등 건축관련기관을 설립하여 인프라를 조성
- 두 번째 건축정책(1996년, Architecture of Space)에서는 건축관련 부처와 서명을 이끌어 도시 개발과 조경,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건축정책 규모 및 범위를 확장
- 세 번째 건축정책(2001년, Shaping the Netherlands)에서는 9개의 대형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건축문화관련 정책을 선행 정책과제로 도출하여 건축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 신국립미술관 시범사업으로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음
◀ The Holland Waterline 시범사업 : 약 85 킬로미터를 따라 늘어선 운하와 수문, 19세기에 조성된 방어용 요새와 벙커를 대상으로 재 개발하는 프로젝트

- 네 번째 건축정책(2005년, 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에서는 건축과 문화와 접목하여 문화정책 요소들이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공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 국가건축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 BNA(The Royal Institute of Dutch Architects)는 건축 · 도시 관련부처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방식, 공공건축에 관한 계획 및 설계절차, 공공 공간과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비롯하여 국가건축물에 대한 관리, 인프라 확충, 법률제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



네덜란드 국가자문위원회 BNA의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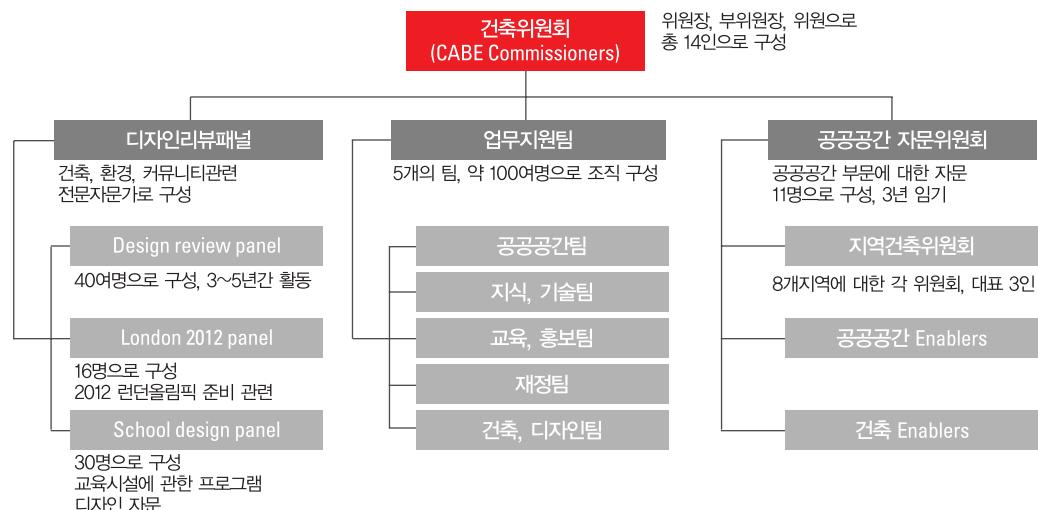
2. 건축가의 역할을 중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프랑스의 건축정책

- 1997년 이후 건축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주요 3대 정책으로 ‘교육개혁’, ‘센터설립’, ‘직능개혁’이 추진
 - 건축문화유산센터, 풍피듀센터, 건축박물관 및 자료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건축관련 전문가뿐만이 아닌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시프로그램을 기획 · 추진함으로써 공공건축의 품질향상의 중요성을 범국민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
 - 건축문화유산부에서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개발업자와 거대 건설업체에 의해 축소된 건축가의 지위와 역할이 건축과 도시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건축가를 공간디자인의 조정자로 역할을 확대하여 건축가의 역할을 강조
- 건축법을 근거로 구성된 ‘건축 · 도시계획 · 환경위원회’ (CAUE, Conseils d' Architecture d' urbanisme et d' environnement)는 건축과 도시계획, 환경에 대한 정부 자문기구로서 건축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
 -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자문 및 보존지역에 계획되는 모든 건축물 및 토지이용에 대한 심의 · 조정, 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건축물의 보존 및 관련계획의 심의를 담당
 - 또한 지자체 및 개별주체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 및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과 함께 설계경기조직, 교육자료 발간 등의 업무도 수행



3. 공공건축의 역할과 가치를 강조하는 영국의 건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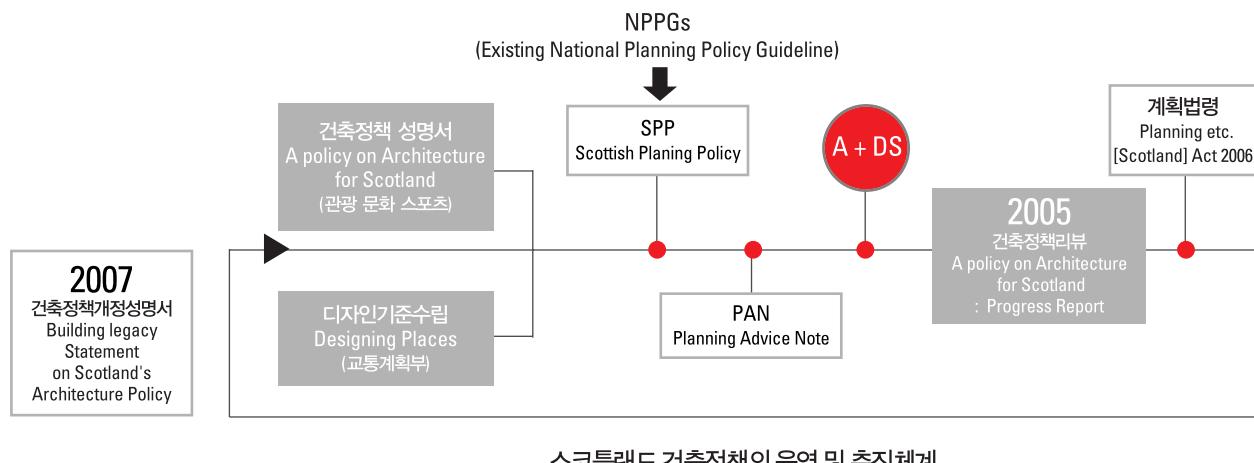
- 영국은 지난 반세기 이후 최대규모의 공공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를 중심으로 공공건축정책이 수행
- CABE는 건축, 도시, 조경 등 공공공간에 관련된 민간전문가와 디자인 리뷰 패널, 업무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1999년부터 정부의 건축정책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행하고, 주요 정책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며, 2005년에는 영국의 건축정책에 관한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정리한 리뷰보고서를 발행
- 디자인 리뷰패널은 공공건축, 학교시설, 런던올림픽 관련 프로젝트 등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공공공간 디자인과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
-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 전문 디자인기술 지원, 교육여건 개선, 기술개발 장려 및 연구개발, 캠페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분야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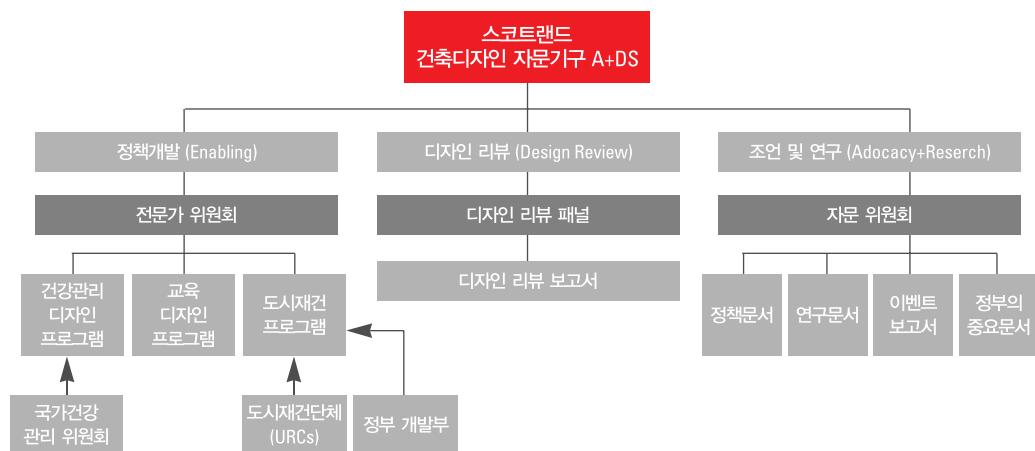
영국 건축위원회 CABE의 조직체계

4.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 정책실효성을 강조하는 스코틀랜드의 건축정책

- 스코틀랜드의 건축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무엇보다 중시하여 건축정책과 디자인기준을 담은 디자인정책 문서(Designing Places)를 발간하고, 계획에 관한 법령(Planning Act 2006)을 입안하여 법제적 실효성을 확보



- 국가차원에서 건축과 디자인 관련정책을 자문하는 건축디자인위원회 A+DS (Architecture and Design Scotland)를 설치하여 운영
- 건축디자인위원회 A+DS는 공공사업의 계획 및 발주과정에 관여하여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 등의 시설물과 도시 및 전원개발에 관한 디자인영역까지 관여하여 우수한 디자인을 장려
- 새로운 건축 · 도시 관련사업의 설계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디자인 채택을 유도하는 계획전반에 관한 자문, 정책지원, 관련연구 및 홍보활동 수행



스코틀랜드 건축디자인 자문기구 A+DS의 조직체계

5. 유럽 건축정책 사례의 시사점

- 건축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럽 각 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유시한 목적과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건축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건축관련 부서의 건축행정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선 등 관련기능 통합을 통한 구조개선을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목표로 함
- 또한 이러한 건축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정책기관을 설립하거나 민간주도의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건축·도시관련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자문, 연구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축·도시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건축·도시관련 법·제도개선, 국가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기획·지원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해 준비 중에 있음
- 건축정책을 시작하는 단계인 우리나라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정책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나라가 처한 현실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 그리고 법·제도적 틀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건축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임

김영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연구실 연구원 (031-478-9619, yhkim@auri.re.k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제10호

발행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710호

전 화 | 031-478-9600 팩 스 | 031-478-9609 홈페이지 | www.auri.re.kr

수록된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 호는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